

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일부개정령안

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가산점”을 “1개월마다 가산점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무경력에 대해서는 1개월마다 가산점을 부여해야 한다.

제2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항 제3호를 삭제 하며, 같은 조 제4항 중 “따른”을 “따라 1개월마다 부여하는”으로 한다.

1. 영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전문직위에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전보가 제한되는 기간 이상 근무한 경력
2. 영 제32조제2항제5호에 따라 규칙으로 정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에 근무한 경력

제25조의3제1항 중 “제24조제1항”을 “제24조”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전문직위 근무경력 가산점 부여에 관한 경과조치) 이 규칙 시행 이후 제25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제24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

전문직위 근무경력에 대해 신설하거나 변경한 가산점 부여 기준이 제25조의3제2항에 따라 적용되기 전까지는 종전의 제24조제2항에 따라 가산점을 부여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4조(근무경력 가산점) ① 임용권자는 5급 이하 공무원·연구사 및 지도사가 해당 계급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(제1호의 경우에는 연구사 및 지도사가 6급 및 7급 공무원으로 해당 지역에서 근무한 경력을 포함한다)이 있는 경우에는 영 제32조제2항 및 연구·지도직 규정 제14조제2항에 따라 <u>가산점을</u> 줄 수 있다.	제24조(근무경력 가산점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 <u>1개월마다 가산점</u> ---.
1. ~ 3. (생략)	1. ~ 3. (현행과 같음)
② <u>임용권자는 영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전문직위에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전보가 제한되는 기간 이상 근무한 경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산점을 부여해야 한다. 다만,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전문직위 운영 현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1개월마다 부여하는 가산점을 달리 정할 수 있다.</u>	② <u>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무경력에 대해서는 1개월마다 가산점을 부여해야 한다.</u>

1. <u>3년 초과 4년 이하의 기간 동안 근무한 경력: 1개월마다 0.1점</u> 2. <u>4년 초과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근무한 경력: 1개월마다 0.12점</u> 3. <u>5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력: 1개월마다 0.15점</u> ③ <u>삭 제</u> ④ 제1항 및 제2항에 <u>따른</u> 가산점은 정기평정기준일 현재까지의 근무경력에 대하여 개월 수 단위로 계산하여 평정하되,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산입하지 아니한다. ⑤ (생략) 제25조의3(가산점 부여 기준의 공개 등) ① 제23조, <u>제24조제1항</u> 및 제25조의2에 따른 가산점의 부여 기준·요건 및 가산점 평정대상기간 등 가산점 부여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. ② (생략)	1. <u>영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전문직위에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전보가 제한되는 기간 이상 근무한 경력</u> 2. <u>영 제32조제2항제5호에 따라 규칙으로 정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에 근무한 경력</u> <u><삭 제></u> ④ ----- <u>따라 1개월마다 부여하는</u> ----- ----- ----- -----. ⑤ (현행과 같음) 제25조의3(가산점 부여 기준의 공개 등) ① ----- <u>제24조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 ② (현행과 같음)
---	--